▷ 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 ◁

1.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

대상	등교중지 기간	출결처리 등	인정점	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	
격리 통지를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	○출석인정결석	기준점수의 100%	
받은 학생	격리 해제할 때까지	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72 47 7 23313	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	가족(동거인)이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 <유의사항>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♥, 1)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(PCR검사) 결과가 음성인 경우, 2)격리통지를 받은 '즉시'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○별도 시험실 제공			
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	
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<유의사항> - 다만, 선제검사(병원·항공 등 직업특성, 대회참여, 이동검체검사 등)의 경우 적용 제외			
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* (임상증상 발현학생)	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(호전) 시까지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제공	기준점수의 100%	

* 임상증상자 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,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

(1)선별진료소의 검사(진료)결과와 (2)증상에 대한 의사소견(진단)서 ②)를 확인 ③ 후 등교 허용 가능

- 1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
- ②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,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
- ❸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,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·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,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
- ※ 등교 후 유증상학생은 별도의 관찰실에서 증상 관찰 후 응시 여부를 판단(반드시 학부모 확인 필요)

2.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

대상	조건	출결처리 등	인정점
고위험군학생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	기준점수의 100%
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관심', '주의'	○질병결석 ○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	기준점수의 90%
기타결석 (감염 우려)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기타 결석 ○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	기준점수의 90%
미인정 결석	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	○미인정 결석	(최하점) -1점

※ 정기고사 기간과 고사 후 일주일은 교외체험학습을 원칙적으로 금한다.

3.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방안

대상	출결처리	출결 증빙자료	인정점
접종일	○출석인정결석	예방접종내역 확인서, 예방접종 증명서	기준점수의 100%
접종 후 1~2일	○출석인정결석	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, 학부모 의견서, 담임교사 확인서 등	기준점수의 100%
접종 후 3일~	○질병결석	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소견서, 진료확인서,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등)	기준점수의 90%

4.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

최종인정점 = 기준고사점수 \times $\frac{결시고사평균}{$ 기준고사평균 \times 인정점부여비율

예시)

가.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한다.

과목	기준고사(1차고사)		결시고사(2차고사)	
	평균	기준고사 점수	평균	최종 인정점
 수학	68.0	65	62.3	53.60

- * 2학기 2차고사를 유증상으로 결시한(90%인 경우)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
 - 1) 68.0 : 65 = 62.3 : 인정기준점수
 - 2) 인정기준점수 = (65×62.3) / 68 = 59.55
 - 3) 인정기준점수 × 0.9(인정점 부여비율) = 53.60
 - 4) 최종 인정점 = 53.60
- 나. 기준점수 및 최종인정점 부여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.